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54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360,720원, 지방교육세 1,084,480원, 농어촌특별세 2,168,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가. 원고는 2022. 5. 31. ○○시 ○○구 B, C 밭(면적 합계 606㎡,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했다고 신고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피고는 2023. 10. 10. 원고에게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감받은 취득세 19,360,720원, 지방교육세 1,084,480원, 농어촌특별세 2,168,960원 합계 22,614,16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인접 지역인 ○○시 ○○구에 거주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병원 통원 시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호자 차량등록증 발급을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동생의 주소지인 ○○ ○○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것일 뿐, 실제로는 ○○시 ○○구에 거주하면서 자경농민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이 선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한다(제6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하면 취득 시를 기준으로 ①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이어야 하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취득하여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①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일 것, ②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일정 면적 이내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제3조 제2항).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다(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요건 중 하나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사정에 비추어 '취득 당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직접 경작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취득 당시 감면요건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당초의 감면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추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를 추징요건 판단 시점으로 삼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에서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처분사유를 밝혔고,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 규정에 따른 추징 처분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원고 주소를 ○○시 ○○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소가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일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봄이 옳다.

가) 원고는 2019. 11. 11.부터 부모의 주소지인 ○○ ○○군 D리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2020. 5. 12.부터 부모와 함께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으로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을 하고 같은 리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다가[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자기가 '자경농민'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농지 취득 직전인 2022. 5. 23. ○○시 ○○구로 전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직후인 2022. 6. 23. 다시 ○○ ○○군의 부모 집으로 주민등록을 되돌렸다. [이처럼 ○○ ○○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이 이 사건 토지 취득 전후 한 달 남짓이었던 점에 비추어, 종래 ○○ ○○군에서의 생활 근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 원고는 2022. 9. 27. 위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된 이후, 2022. 9. 29. 새로 자신을 경영주로 하고 ○○ ○○군 E면을 주소지로 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뒤 ○○ ○○군 F리에 있는 임야를 경영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다) 원고는 2023. 12. 22.에는 76㎡, 2024. 1. 15.에는 296㎡의 ○○ ○○군 D리에 있는 농지를 추가로 매수해 취득하는 한편, 자기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지 소재지에서 30k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취득하는 농지에서 30km 이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원고는 취득세 감면신청서 서류작성을 대리한 법무사가 마음대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가 ○○시 ○○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 과세예고통지(2023. 6. 29.) 이후 작성된 것이거나,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끝.